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여비 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8년부터 공무원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지급제¹⁾로

전환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²⁾하도록 하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음.

그러나 숙박비의 경우 제1호 적용대상자는 46,000원, 제2호 적용대상자는 4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와 농어촌 지역과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시, 농어촌)에 따라 숙박비를 달리 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이 조례의 경우 조례의 제명은 물론 1개 조문이 신설되면서 조문 전체에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일부개정방식보다는 전부개정방식이 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전부개정안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실비지급제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대통령령 20381호, 2008.1.1 시행
2) 종전의 정액제로 환원되는 것이며, 정액제는 여비 항목별로 출장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